

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(제11조 관련)

| 허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효기간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유수(流水)의 점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        |
| 2. 토지의 점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        |
| 3. 소하천시설의 점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        |
| 4. 소하천시설의 신축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                       |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|
| 5.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·개축 또는 변경           |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|
| 6. 토지의 굴착·성토(盛土) 또는 절토(切土),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    | 1년         |
| 7. 토석(土石)·모래·자갈·죽목(竹木),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     | 1년         |
| 8.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     | 1년         |
| 9.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, 철도, 상수도 관로(管路),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| 영구         |
| 10.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       |

비고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